

美경기부양법안 분석 및 활용전략



CONTENTS

목 차

요 약 / 1

1. 경기부양법안 추진개요 / 3

2. 경기부양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 5

3. 경기부양법안 실행절차 / 11

4. 산업별 영향 및 업계반응 / 15

5. 국내업계 수혜분야 및 활용방안 / 23

요 약

2009년 2월 17일 미국 경기부양법안(ARRP, 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이 발효됐다. 역대최대인 총 7,87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은 예산지출 3,080억불(39.1%), 지방정부지원금 1,980억불(25.2%), 감세 2,810억불(35.7%)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그린 뉴딜’정책에 걸맞게 경기부양법안은 에너지절약·친환경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재생에너지 개발 등 그린에너지 부문에 전체 예산지출의 20%에 해당하는 617.6억불이 배정되고 감세규모도 전체의 9.4%인 199.6억불에 달하고 있다.

고속도로건설(275억불), 고속철도건설(80억불) 등 공공인프라 확충 및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었다. 또한 광대역통신망(72억불), 지능형전력망(110억불), 건강기록전산화(208억불) 등 정보통신산업 관련분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보호주의’ 논란을 불러왔던 미국산 철강·공산품 의무구매조항(바이 아메리칸)은 ‘WTO 등 국제협정을 준수’하는 형태로 절충되어 반영되었다.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인 한국은 중국, 인도 등 미가입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WTO협정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주정부 등을 통해 추진되는 프로젝트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프로젝트별 세부추진절차(Formular)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최대한 빠른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 법안발효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법안발효 이후 30~120일 이내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참여를 위해서는 신속한 프로젝트 정보 입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기업의 진출분야로는 환경, 재생에너지, 정보통신, 보건의료 등이 유망하다. 프로젝트별 참가조건, 추진절차 등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며, 미국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참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I. 경기부양법안 추진개요

☞ 명칭 : ARRP(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1. 추진배경

□ 경기침체극복

-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물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조기에 경제 활성화
 - *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대대적 투자
- 오바마(美44代 대통령)정부 집권초기 경기부양에 전력투구
 - * 111代 의회, 민주당 다수의석(상원: 55/100, 하원: 257/435)차지로 법안통과유리

□ 성장동력확보

- 친환경·재생에너지육성, 정보통신망 개선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 보건·의료체계개선, 교육제도개선 등 중산층 지원강화
 - * 작은 정부(공화당)에서 큰 정부(Keynism 반영)로 전환

2. 추진경과

일시	경과	주요내용
09.1.05	행정부·민주당 법안작성	◇8,250억불규모, 300만 일자리 창출
09.1.26	하원 법안도입	◇8,158억불규모(감세:2,118억불, 재정지출:7,040억불)
09.1.28	법안 하원통과	◇8,195억불규모(감세:1,823억불, 재정지출:6,372억불) - 찬성: 244, 반대: 188
09.1.31	상원 법안도입	◇8,845억불규모(감세:2,525억불, 재정지출:6,320억불)
09.2.10	상원 통과	◇8,382억불규모(감세:2,926억불, 재정지출:5,456억불) - 찬성: 61, 반대: 37
09.2.11	상·하원 조정위 통과	◇7,870억불규모(감세:2,810억불, 재정지출:5,060억불) - 2.13일, 하원(264:183) 및 상원(60:38) 통과
09.2.17	오바마 대통령 서명	◇경기부양법안 발효

□ 오바마 당선자, 경기부양책 마련촉구(08.11월)

- 오바마 당선인, 직면한 위기 해결 뿐 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즉시 준비 촉구

□ 행정부·민주당, 경기부양법안 초안발표(09.1.15)

- 8,250억불 규모 경기부양법안 초안 발표

□ 의회(상·하원), 공화당 반대로 심의난항(09.1.26~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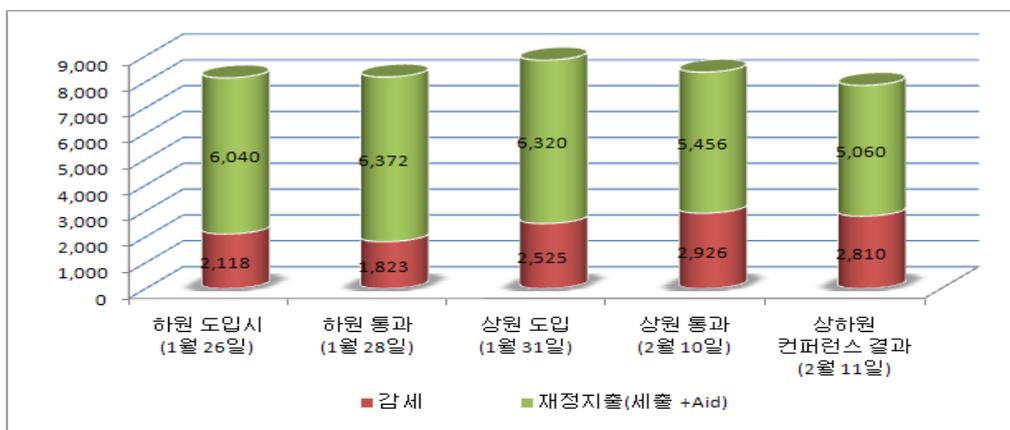
- 법안 주도 민주당 의원들이 세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감세 조항 추가 및 세출 감소 요구
- 하원에서 법안 무난히 통과(1월 28일, 찬성 244:반대 188)되었으나,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족수 60석에 민주당이 미달함에 따라 공화당과 합의 과정에서 난항 끝에 통과
 - * 콜린스 등 중도 공화당 3명이 상원 합의안에 찬성(2월 10일, 찬성 61: 반대 37)

□ 상·하원 조정위(컨퍼런스) 합의(09.2.11)

- 하원 통과 법안보다 크게 축소된 세출 조항으로 인해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행정부·하원·상원 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당일 컨퍼런스 합의발표

□ 의회통과(09.2.13) 및 대통령서명(09.2.17)

- 하원(찬성 246 : 반대 183) 및 상원(찬성 60 : 반대 38) 통과
- 오바마 대통령 서명 및 발효



*자료 : 미 의회 예산국

II. 경기부양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1. 주요내용

가. 구성내역

- 역대최대인 총 7,870억불 규모로 미 연간GDP(138,076억불, '07) 5.7% 수준
 - * 예산지출 3,080억불(39.1%), 지방정부지원 1,980억불(25.2%), 감세 2,810억불(35.7%)
-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인프라구축(1,500억불), 교육·훈련(1,059억불)에 가장 많은 예산배정
 - * 중산층강화, 성장동력마련 등 오바마 대통령 선거공약 대다수 반영

〈세부항목별 구성내역〉

구분	세부내용	규모(억불)
예산지출(39.1%)	보건·노동·교육	712
	주거·교통	611
	주정부재정안정자금(교육)	536
	에너지·수자원	508
	농업·지역개발	264
	상무·법무·과학	158
	국방	114
	환경·내무	105
	조달·중소기업	67
	외교	6
지방정부지원(25.2%)	주정부 등 지방정부 지원금	1,980
감세(35.7%)	개인·기업 세금감면	2,810
합 계		7,870

자료 : 미 의회 예산국

나. 예산지출

□ 보건·노동·교육(712억불)

- 특수교육 프로그램인 Special Educations(IDEA 포함) 지원 확대(122억불), Pell 장학금 지급 금액을 500달러 증액(156억불) 등
 - * 상기 프로그램 예산은 개별절차(Formula) 따라 각 주정부로 배분되어, 536억불의 주정부 안정 자금(State Fiscal Stabilization Fund)과 함께 학교, 대학, 조기 교육 프로그램등에 사용될 전망

□ 주거·교통(611억불)

- 고속도로 건설 275억불, 고속열차건설 80억불, 대중교통투자 84억불, 철도투자 13억불 등 교통시설 확충에 약 481억불 투입 전망
 - * 개별절차(Formula)에 따라 해당 주정부에 예산배정

□ 에너지·수자원(508억불)

- 주정부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교부금 배정
 - * Energy Efficiency & Conservation Block Grant, State Energy Program 등
- 내후성(Weatherization) 개선 50억불, 지능형 전력망 지원 110억불
- 신규 배전 설비에 대출보증 20억불, 재생에너지사업 대출보증 60억불
- 주정부 및 시정부 고연비 트럭·버스 구입 지원 3억불, 전기 자동차 인프라 구축 4억불, 에너지 스타 부착 가전제품 구매 리베이트 3억불
-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리튬이온 배터리, 하이브리드 전기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 설계자 등 모두에 해당) 제조업체에 교부금(Grant) 20억불
- 화석 연료 R&D 프로그램 34억불(화석 연료 에너지 R&D프로그램10억 불, 청정 석탄 이니셔티브 8억불 등)

□ 상무·법무·과학(158억불)

- 광대역 인터넷 47억불, 지구 온난화, 바이오 연료 및 복합 에너지 과학 등 연구 지원 16억불 NASA 지구과학 기후연구과제 등 지원 4억불
 - * 광대역 인터넷 확충 예산은 농무부 인프라 대출 및 대출보증 프로그램에 배정된 25억불과 합쳐 총 72억불 규모

□ 환경·내무(105억불)

- 지방 수자원 인프라개선 60억불
 - *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친환경 인프라에 투자
- 무기 생산 및 에너지 연구 지역 위험 물질 제거에 60억불
 - * ‘환경(Green spending)’분야로의 예산지출은 대부분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나, 전통적 환경사업에도 일부예산 배분

□ 조달·중소기업(67억불)

- 연방정부 청사 효율성 개선 45억불
 - * 조달청은 1,500여개가 넘는 연방정부 청사 관리(신규 건축 포함) 담당
- 연방정부 고연비 자동차 조달 3억불
 - * 교체 대상 자동차보다 10%이상 연비가 높고, 2010년9월30일 이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상용화 될 경우, 플러그인 자동차 구매

다. 세금감면

□ 원천징수 소득세 감면

- 근로자 1인당 400불 또는 부부 당 800불 세액 공제
 - * 수혜대상 : 연간소득 기준, 미혼은 75,000불 미만 부부는 합산하여 150,000불 미만

□ 주택구입 세액공제 확대

- ‘08.4~’09.6월 사이 신규주택 구입자 대상 세액공제 상한선을 기존 7,500불에서 8,000불로 인상
 - * 차후 환급 의무 철폐(2009년 11월 30일 만료)

자동차 구입세금 감면

- '09.12.31일까지 49,500불 이하 신형 자동차 구입 시, 판매세·물품세 공제
* 수혜대상: 구매자 연간소득 기준, 미혼 125,000불 미만 부부합산 250,000불 미만

중소기업 세금환급 소급기간 연장

- 연간 매출액 1,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당기 순영업손실에 대한 既납부 세금환급 소급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공장·설비투자 감가상각 확대

- 1년 간 공장·설비 신규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확대인정

라. 지방정부지원

건강기록 전산화(208억불)

- 병원 간 호환이 가능토록 건강기록 전산화 지원
* 2014년까지 전산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에 벌칙부과

실직자지원(643억불)

- 실직자 대상 건강보험료 지원 : 251억불
- 실직보험기간연장 지원 : 392억불

육아 및 의료보험지원(1,080억불)

- 육아 지원 등에 180억불
- 저소득층 의료보험(Medicaid) 지원 확대 900억불

2. 쟁점사항

□ Buy American 조항 : 미국산 철강 및 공산품 의무 구매

☞ Title XVI(1605) : Use of American Iron, Steel, And Manufactured Goods
 None of the funds appropriat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by this Act may be used for a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alteration, maintenance, or repair of a public building or public work **unless all of the iron, steel and manufactured goods used in the project are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은 동 조항이 WTO 정부조달협정(GPA) '비차별 원칙'에 위배되고, 미국이 당초 주창한 금융·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G-20 국제공조 강화정신을 훼손한다고 비난하며 삭제·수정 요구
 → 최종법안은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방식으로(in a manner consistent with United State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를 추가하여 WTO GPA 협정가입국에 대해서는 'Buy American'조항 적용면제

<참고> WTO 정부조달협정(GPA)

- 발 호 : 1995년
- 가 입 : 39개국
 * 미국, EC(27개 회원국), 캐나다,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일본,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네덜란드, 앵투루바
- 대 상 : 중앙·지방정부, 공기업
 * 적용대상 지방정부·공기업은 가입국별 양허안에 명기
- 내 용 : 일정액 이상 물품·서비스·건설 구매 시 '내국민대우', '비차별 원칙' 적용
- 예 외 : '국가안보·국방목적 무기 및 전쟁물자 조달', '공공질서·안전유지목적조달'

<양허하한선(2008~2009)>

양허하한금액 (단위 : US\$)	중앙정부 양허기관		주정부 양허기관	
	재화/서비스	건설 서비스	재화/서비스	건설 서비스
WTO GPA	194,000	7,443,000	528,000	7,443,000

□ 한국産 진출영향

- 한국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서 일정금액(양허하한)이상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Buy American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
 - * 미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양허하한이상 조달계약에 대해서는 한국산을 미국산과 동등하게 취급
-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WTO GPA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양자협정(FTA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달참여가 제한될 전망
- 한편, 미국은 국제협정(WTO, FTA 등)에서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가 재원을 받아 추진하는 고속도로, 대중교통시설 건설프로젝트와 연방항공청 공항 프로젝트는 이미 양허에서 제외한 상태
 - * 상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국산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전망

〈참고〉 육상교통지원법(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 제 정 : 1982년
- 내 용 : 미국 교통부가 주정부에 교부한 기금의 미국외 생산 철강·공산품 구입 금지
- 대 상 : 고속도로, 대중교통시설
- 특 기 : WTO GPA 적용 유예 (Appendix I)

〈참고〉 항공개선법(Airport & Airways Improvement Act)

- 제 정 : 1990년
- 내 용 : 미국 항공청이 주관하는 공항관련 프로젝트 조달시 미국산 철강·제조품 사용
- 대 상 : 공항
- 특 기 : WTO GPA 적용 유예 (Appendix I)

- 아울러,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대외 정부조달 협정에 대해 양허할 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상당수 주정부는 교역상대국과 마찰 없이 미국산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상황

III. 경기부양법안 실행절차

1. 연방정부발주 프로젝트

조달규정(FARs :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 연방정부 조달체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공공정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 적시에 최고가치 제품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경쟁절차(Competitive procedure)와 고정가격(Fixed price) 계약 원칙

조달방법

- 100,000불 이상 조달에 대해서는 봉인입찰(Sealed bidding)과 협상조달(negotiated acquisition)로 구분
 - * 봉인입찰: 입찰을 통해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기업과 계약
 - * 협상조달: 경쟁제안서, 제한경쟁, 단일공급 등으로 구분

〈봉인입찰 및 협상조달 비교〉

구분	봉인입찰	협상 조달 절차
Initial Solicitation Document	IFB(Invitation for Bid)	RFP(Request for Proposal)
오퍼(Response/Offer)	입찰(Bid)	제안서(Proposal)
사양 및 소요내역	반드시 정확	추후 수정가능
최소 예상 입찰자 수	2	단독가능
선정 기준	최저 가격 응찰자	제안서 평가
계약 형태	고정 가격(fixed-price)	고정가격(fixed-price) 비용보상(cost-reimbursement)

*자료 : Federal Contracting Made Easy(2nd Edition)

2. 지방정부발주 프로젝트

프로젝트 추진절차

- 기존절차(Formular) 또는 신규절차를 통해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로 자금을 배정하여 경기부양 프로젝트 추진

- 고속도로 건설(275억불), 내후성 증강프로그램(Weatherization, 50억불), 에너지 효율성확대 프로그램(62억불), 폐수처리 프로그램(60억불) 등은 모두 기존 절차(Formular)를 통해 주정부로 자금이 배분되어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 됨

□ 주(州)정부별 에너지 프로그램 예산배정

- 에너지 효율성 강화 및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에서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오하이오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될 전망

구분		내후성 증강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총 계
순위	교부금 예산	\$5,000,000,000	\$3,100,000,000	\$3,200,000,000	\$11,300,000,000
	실제배정예산	\$5,000,000,000	\$3,100,000,000	\$3,200,000,000	\$11,300,000,000
1	Texas	\$345,897,228	\$215,407,000	\$224,020,223	\$785,324,451
2	California	\$192,170,976	\$224,485,000	\$338,481,741	\$755,137,717
3	New York	\$403,961,699	\$125,786,000	\$179,480,633	\$709,228,332
4	Florida	\$190,181,790	\$125,013,000	\$168,780,499	\$483,975,289
5	Ohio	\$273,338,303	\$97,915,000	\$105,770,497	\$477,023,800
6	Pennsylvania	\$258,844,898	\$100,783,000	\$114,632,681	\$474,260,579
7	Illinois	\$248,641,188	\$103,049,000	\$118,806,845	\$470,497,033
8	Michigan	\$248,846,494	\$83,759,000	\$92,118,684	\$424,724,178
9	Georgia	\$130,055,864	\$82,340,000	\$89,193,277	\$301,589,141
10	North Carolina	\$136,715,178	\$76,422,000	\$84,926,602	\$298,063,780
11	New Jersey	\$121,853,264	\$74,832,000	\$79,956,169	\$276,641,433
12	Indiana	\$135,265,558	\$68,862,000	\$58,722,074	\$262,849,632
13	Wisconsin	\$144,541,237	\$55,909,000	\$51,826,356	\$252,276,593
14	Missouri	\$131,974,719	\$57,287,000	\$54,438,298	\$243,700,017
15	Massachusetts	\$124,747,578	\$55,774,000	\$59,837,940	\$240,359,518
16	Virginia	\$96,931,634	\$70,427,000	\$71,543,343	\$238,901,977
17	Minnesota	\$134,695,876	\$54,452,000	\$48,073,123	\$237,220,999
18	Tennessee	\$102,460,197	\$62,497,000	\$57,231,146	\$222,188,343
19	Washington	\$60,728,760	\$60,750,000	\$60,309,951	\$181,788,711
20	Arizona	\$67,011,447	\$54,685,000	\$59,858,319	\$181,554,766

*자료 :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주(州)정부별 인프라구축 프로그램 예산배정

- 도로, 교량, 교통시설, 폐수처리 등 인프라부문 예산배정에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순으로 많은 금액 배정 예상

구분		고속도로	교통시설	Clean Water	Drinking Water
순위	교부금 예산	\$27,060,000,000	\$8,400,000,000	\$4,000,000,000	\$2,000,000,000
	실제배정예산	\$27,060,000,000	\$8,400,000,000	\$4,000,000,000	\$2,000,000,000
1	California	\$2,569,568,320	\$1,068,460,440	\$285,360,826	\$163,000,000
2	Texas	\$2,250,015,146	\$374,545,601	\$182,365,910	\$164,800,000
3	New York	\$1,120,684,723	\$1,222,262,583	\$440,402,555	\$89,000,000
4	Florida	\$1,346,735,003	\$316,205,137	\$134,682,565	\$90,400,000
5	Illinois	\$935,592,704	\$467,545,247	\$180,453,040	\$81,600,000
6	Pennsylvania	\$1,026,429,012	\$343,714,184	\$158,048,880	\$67,400,000
7	Ohio	\$935,677,030	\$179,819,269	\$224,618,446	\$60,000,000
8	New Jersey	\$651,774,480	\$524,233,282	\$163,047,512	\$44,200,000
9	Michigan	\$847,204,834	\$134,965,409	\$171,560,760	\$69,200,000
10	Georgia	\$931,585,680	\$143,572,747	\$67,461,598	\$56,200,000
11	North Carolina	\$735,526,684	\$103,318,600	\$72,010,338	\$67,400,000
12	Massachusetts	\$437,865,255	\$319,720,044	\$135,468,307	\$53,600,000
13	Virginia	\$694,460,823	\$116,112,862	\$81,655,882	\$21,200,000
14	Missouri	\$637,121,984	\$85,140,827	\$110,609,858	\$38,800,000
15	Indiana	\$657,967,707	\$84,293,441	\$96,157,966	\$28,000,000
16	Washington	\$492,242,337	\$179,051,657	\$69,387,016	\$42,800,000
17	Wisconsin	\$529,111,915	\$81,648,067	\$107,867,327	\$38,800,000
18	Maryland	\$431,034,777	\$179,265,027	\$96,501,198	\$27,600,000
19	Tennessee	\$572,701,043	\$72,024,769	\$57,961,836	\$20,800,000
20	Arizona	\$521,958,401	\$100,566,771	\$26,949,209	\$56,800,000

*자료 :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3. 신속·투명한 프로젝트 추진

□ 신속한 프로젝트 추진

- 신속한 경기부양 효과를 목표로 법안발효와 동시에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

- 경기부양예산으로 추진되는 대다수 프로젝트가 법안발효 후 30~120일 이내에 계획이 수립되어 시작될 것으로 전망 됨
- 법안 발효 후, 120일 이내 50%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을 배정받은 정부기관은 프로젝트 시장에서 완료에 이르기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어 자금 집행 예정

☞ **신속집행조항(Use it or lose it)**

경기부양자금 수령자가 1년 내 자금의 50%, 2년 내 100%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동 자금을 다른 프로젝트로 전용

□ **기존 프로젝트 예산배정 가능**

- 신규 프로젝트에 국한하지 않고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예산 사정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자금 배정이 가능
 - * 특히 경기침체 및 세수 급감 등 재정난으로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중단했던 주정부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우선 시행할 것으로 예상 됨
-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을 것을 미리 가정하고 이미 추진계획인 프로젝트의 입찰공고를 주정부 홈페이지에 공지해 놓은 상태
 - * 매사추세츠 청정수 공급, 광대역통신망 프로젝트 등

□ **투명한 프로젝트 추진**

- 경기부양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프로젝트 상세내용을 홈페이지(www.recovery.gov)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연방정부는 자금 사용계획, 경쟁 교부금 입찰 정보 등을 공시하여야 하며, 지방정부도 모든 프로젝트의 세부정보를 동 사이트에 게재해야 함
- 특별위원회(Recovery Act Accountability & Transparency)를 구성하여 자금의 운영현황을 감독하는 한편 조기에 문제점을 발동할 예정

IV. 산업별 영향 및 업계반응

1. 산업별 영향

☞ 수혜산업·품목

- ◇ 에너지산업, 재생에너지산업,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산업, 정보통신, 철강, 건축자재, 중장비·기계, 폐수처리 산업 등
- ※ 감세폭이 크게 축소된 주택산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됨
 - 주택 구매 시 세액공제 상한선 : 15,000불 → 8,000불

□ 친환경(Green) 산업

- 에너지절약형·환경친화 상품, 지능형전력망, 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산업 등이 경기부양법안의 대표적 수혜분야
- ‘그린 뉴딜’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경기부양법안은 그린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증대, 재생에너지 개발)분야에 대한 세출과 감세 비율이 높음
 - * 그린에너지 예산은 경기부양법안 전체의 약 10.4%차지
 - * 세출 : 전체 세출규모의 약 20%인 617.6억불
 - * 감세 : 전체 감세규모의 약 9.4%인 199.6억불

〈경기부양법안 중 그린에너지 관련 세출예산〉

예산 배정 내역	예산(억불)	비고
R&D & Demo (총 82억 달러)		
바이오매스나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비롯, 응용 R&D, 데모 및 배치 활동 지원	25	바이오매스(8억불), 지열(4억불), 정보 및 통신 기술 효율성제고(5천만불)
국책연구소를 포함한 에너지부 과학국(Office of Science) 재원 공급	20	
화석연료 R&D 프로그램	34	화석 연료 에너지 R&D(10억불) 클린 석탄 파워(8억불) 탄소 캡처 및 생산 효율성 증강 프로젝트 (15.2억불) 지질상 탄소 격리 R&D(7천만달러)
국방부 대상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증가 R&D, 테스트 및 평가	3	

클린 에너지 보급 (총 60억불)		
재생 에너지 기술 및 현대화 된 배전 기술에 대해 대출개런티(Innovation Technology Loan Guarantee Program)	60	
에너지효율성확대 (총 168.6억불)		
GSA 프로그램 통해 연방건물 에너지 효율성 증강(high performance green bldg)	45	
주정부 에너지 활동 지원 위해 Block Grant(일반적인 조건만 있고 특수한 조건을 달지 않음.) 지급	63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Block Grant(320억불) State Energy Program(SEP,310억불)
내후성 증강 지원 프로그램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50	
인디언 하우스링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지 효율성 증강	5.1	
주택도시개발부(DHUD)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주거지 에너지 효율성 증강	2.5	
에너지 스타 가전제품 구매시 리베이트 제공	3	
국방부 시설 보수 및 업그레이드 배정 예산42.4억불 중 일정 비율도 에너지 효율성 증강 프로젝트에 사용될 계획	NA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대체에너지 자동차 구매 촉진 (총 30억 달러)		
고급 배터리 및 관련 부품 제조/미국 내 생산되는 고급 배터리 시스템이나 자동차 배터리(고급리튬이온 배터리, 하이브리드 전기 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모두 해당) 제조업체에 교부금(grant) 지급	20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활동 지원	4	
주정부대체에너지버스/트럭구매지원 (Alternative Fuel Vehicles Pilot Grant Program)	3	
연방정부 자동차 조달시 고연비 자동차 구매	3	교체 대상 자동차보다 10%이상 연비가 높고, 2010년9월30일 이전 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상용화 될 경우 플러그인 자동차 구매
그리드 업그레이드(스마트그리드 관련 활동 지원 등) (총 110억 달러)		
전기 그리드 업그레이드 활동 지원 (Electricity Delivery and Energy Reliability Program)	45	이중 1억불은 인력 개발 트레이닝에 사용
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BPA) Western Area Power Authority(WAPA) 대출 가능 금액을 각각 325억불 씩 증가시킴으로써 배전 시스템 확대 및 업그레이드지원	65	BPA와 WAPA는 모두 에너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4개 전력 마케팅기관 중 하나로 이들 기관은 다용도 수력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전력을 마케팅/배전

〈경기부양법안 중 그린에너지 관련 감세내역〉

세금감면내역	규모(억불)	비고
클린에너지 보급(총 149억불, 10년 간)		
재생 에너지 생산세액 공제 기간(PTC; Production Tax Credit)을 3년 연장(2012년 12월 31일까지)	131.43	
생산세액공제(PTC) 대상 재생 에너지 시설 중 2009년이나 2010년에 설치된 것은 30%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로 대체 가능	2.85	풍력 발전 업체가 10년에 걸쳐 세액 공제가 이뤄지는 PTC 대신 즉각적인 세액 공제가 가능한 IT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용 경색에 대처토록 지원
연방정부 지원 파이낸싱 시설에 대해서도 온전한ITC허용(이전에는제한적), 소형 풍력 생산업체에도온전하게 30%의 세액 공제 허용	6.04	소형 풍력 생산업체에는 KW당500불로 상한선을 설정해왔음.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임시적으로 PTC나 ITC 대신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30%에서교부금(grant)을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2009년이나 2010년 건설이 시작된 프로젝트에 한정)	-	일반적인 경우 PTC나 ITC는 금융기관에서 세금공제 목적으로 클레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 경색 이후 이들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과세 대상 소득 급감)되어 이를 클레임할 필요성 저하
클린재생에너지채권 (CREBs; Clean Renewable Energy Bonds) 발급에 16억 달러를 배정함으로써 비영리기관 등에서 소유/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시설 건설 파이낸싱 지원	5.78	이들 비영리 기관은 PTC나 ITC 클레임 불가
주거용 풍력, 지열, 태양열 자산에 대한 공제 상한선을 철폐	2.68	
에너지 효율성 증강 (총 28억불, 10년 간)		
주정부/시(municipal)정부/부족(tribal)정부가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파이낸싱 지원목적으로 QECEs(Qualified Energy Conservation Bonds)발급에 24억 달러 배정	8.03	
에너지 효율적인 홈 임푸루브먼트에 대한 세액공제 만료 기간을 201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비율을10%에서 30%로 확대	20.34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대체에너지 자동차 구매 촉진(총 21억불, 10년 간)		
비수소(nonhydrogen) 급유 자산에 대한 공제비율을 2010년까지 50%까지 확대 최대 공제액 상한선은 기업 5만달러, 개인 2천달러	0.5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확대 (배터리 크기가 클수록 공제 폭도 확대)	20.02	
대중교통 및 철도(총 1.92억불, 3년 간)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교통편 제공시 받는 세액공제 금액과 주차장 제공시 받는 세액공제액을 월230불로 통일	1.92	이전에는 교통편 제공시 받는 공제금액이 더 낮았음.
총감면 규모 : 약 199.6억불, 10년 간		

□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산업

- 고속도로건설(275억불), 공병대 에너지·수자원 프로젝트(46억불), 고속철도 건설(80억불), 대중교통(84억불), Amtrak(13억불) 등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예정
 - * 고속철도 프로그램 등 철도인프라 개선예산은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대폭 증가
- 특히, 향후 수년간에 걸쳐 정비작업이 추진 될 예정인 철도산업은 이번 경기부양법안을 계기로 한 층 탄력을 받을 전망
 - * 기존 철로 개선(시카고-세인트루이스 노선) 작업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

□ 정보통신 산업

- 광대역통신망(72억불), 지능형전력망(110억불), 건강기록전산화(208억불), 에너지스타제품 구매 리베이트(3억불)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IT) 부문 제품 및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4,000만개의 스마트미터기 설치 촉구
- 도로, 교량 등 SOC사업 외 공공건물(국토방위부 본부 등) 신축프로젝트 등도 통신망 및 서비스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됨
 - * 일부 대형 IT 프로젝트의 경우, 기술적 이유로 특정 업체의 수주가 결정적이어서 일반 기업의 참여는 사실상 제한 될 가능성 높음
 - * 교통안전청(TSA)이 공항내 폭발물 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10억불을 배정하였는데, 현지 동 장비생산 인증 기업이 L3 Com, GE, Revea Imaging Tech 등으로 한정된 상황
 - * 공항 엑스레이 검색기계 역시 Rapiscan, Smith Group 만이 조달인증을 취득한 상태

□ 폐수처리 산업

- 배정된 예산은 60억불(Clean Water : 40억불, Drinking Water: 20억불)로 적은 편이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주정부 예산 사정 악화로 인해 그 동안 연기되었던 수처리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 됨

2. 현지 업계반응(인터뷰)

□ 자동차산업

☞ 자동차 산업 전문 컨설팅사 CSM社 디렉터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시 세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제조업체 뿐 만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 개발업체도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
- ◇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 실적은 500불 내외 남짓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세 + 물품세 공제 프로그램으로 고양될 가능성은 낮으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면 서서히 이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

☞ 국내 A화학 관계자

- ◇ A 화학은 올해 1월 GM사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인 시보레 볼트(Volt)에 리튬이온전지 독점 납품 계약 수주
- ◇ 미국에는 현재까지 친환경 배터리 개발을 본격화한 기업이 없으나, 미국 정부가 고급 배터리 및 관련 부품 제조에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을 계기로 친환경 배터리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
- ◇ 친환경 배터리 개발 및 양산까지는 장기적인 노하우 축적과 오랜 기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는 국내산과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전반적으로 볼 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는 국내 친환경 배터리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정보통신산업

☞ 통신 산업 협회(TIA;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관계자

- ◇ broadband 확충 사업을 통해 장비 업체(스위치, 라우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 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체도 수혜 전망
- ◇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국제협약에 준수하는 선에서 적용된다고 명시된 바, 한국산을 비롯한 외국산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으며, IT 산업이 발달한 한국 기업 진출이 유망

□ 철강산업

☞ 철강수입자협회(American Institute for Int'l Steel) 회장

- ◇ 도로나 교량 건설 등을 포함한 SOC 경기 부양책 규모는 (철강 수요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며, 녹방지용(Corrosion Resistant) 강관이나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제품 수요가 증가 전망
 - ◇ 교통부문과 공병대(에너지/수자원으로 분류되나 SOC 성격) 프로젝트를 합치면 SOC 프로젝트 규모가 500억 달러 가까이 달해, 경기가 좋을 때 자본규모와 맞먹는 수준
 - ◇ 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of 1982로 인해, 한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은 고속도로나 교량 분야 내 진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지만, 46억이 배정된 육군 공병대(Army Corps of Engineers) 에너지/수자원 프로젝트는 WTO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이 진출 가능한 바, 시도해 볼만
- * 미 공병대는 WTO 정부조달 협정 미국 양허 정부기관 중 하나

☞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대정부 활동(Gov. Relations) 관계자

- ◇ 올해부터 각종 SOC 경기 부양자금이 주정부와 로컬 정부로 흘러들어가 바로 개시가 가능한 프로젝트들은 금년 여름이나 가을부터라도 추진될 듯하며, 2010년부터 SOC 프로젝트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 ◇ Rebar 또는 콘크리트 강화용 철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바이 아메리칸 조항으로 인해 외국산 진출에 제약이 따르지만, 혹시라도 미국산 철강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진출 여지. 한편, 대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업그레이드(School Modernization) 프로젝트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진출 시도해볼 만

□ 건축자재

☞ National Concrete Masonry Association 대정부 활동(Gov. Affairs) 디렉터

- ◇ 콘크리트 paver를 서로 엮어줄 수 있는 硬柱身(경주신, hard scrape), paving 벽돌, 조경용 자재 품목 등에 대한 수요 확대 예상
- ◇ 개인적으로, 한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참여 반대

☞ Central New York Retail Lumber Dealers Association 관계자

- ◇ 내후성 강화 자재나 일명 봉투 자재(envelope material)로 불리는 주택내외장재들과 에너지 스마트한 냉난방 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동 협회 뿐 만 아니라 주택 건축 산업 협회들은 “그린 빌딩”을 프로모션 중
- ◇ 품질과 가격만 좋다면야 한국산 등 외국산 자재 사용을 찬성하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 섬유산업

☞ 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s 회장

- ◇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찬성(한국산이나 중국산 사용 금지 요망)하며, 특히 국토방위부 로까지 Berry Amendment를 확대한 것에 대해 환영 • 양자간 FTA 시대 막 내리고 WTO 통한 다자간 협정에 주력
 - 경기 불황으로 업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무역 명목 하에 선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 United States Association of Importers of Textiles and Apparel 관계자

- ◇ 경기 부양법이 발효된다 해도, 동 법 내 섬유 수요를 견인할 만한 조항이 없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고 있음
- ◇ 경기부양자금이 사용된 프로젝트 내 섬유 수요가 있다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 특히 군복이나 공항 내 교통안전청(TSA) 유니폼은 Berry Amendment가 적용되는 바, 이의 적용 대상 밖인 헬스케어 분야(병원 등) 내 유니폼 조달에 관심을 가져 볼만 함 (단, FDA 요건 충족을 전제로)

□ 중장비·기계 산업

☞ 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s 관계자

- ◇ SOC 프로젝트에 힘입어 건설 중장비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협회 차원에서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반대 입장 견지(해외로부터 보복 우려)하고 있는데, 상하원 표결을 통과한 최종 경기부양법 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중장비에도 적용될 것으로 해석하진 않고 있음
- ◇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극심한 미국 건설 경기 침체로 수출이 급감한 한국산 중장비 및 기계 수출도 호전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을 가속화(bonus depreciation) 하는 등의 감세 조항이 신설된 것도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예상

□ 환경·에너지 산업

☞ 환경산업 컨설팅사 Zweig White 컨설턴트 인터뷰

- ◇ 폐수처리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그린 빌딩 프로젝트는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 위축 정도가 컸던 만큼, 부양책 발효시 급속도로 투자 심리 회복 전망. 저비용 고효율의 차별화된 기술 마케팅 필요

☞ GE Infra & Water, Global Product Development 수처리 기술 전문가

- ◇ 60억 달러가 폐수처리 프로젝트에 공급되면, 돈줄이 막혀 연기되었던 프로젝트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

☞ American Wind Energy Association 미디어 담당자 Christin Real de Azua

- ◇ 감세 조항 확대로 인해, 수요 확대 예상. 민간 프로젝트가 대부분으로 바이 아메리칸 조항 준수 의무가 없는 바, 한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진출 확대 가능. 양자간 FTA 시대 막 내리고 WTO 통한 다자간 협정에 주력
- 경기 불황으로 업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무역 명목 하에 선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V. 국내업계 수혜분야 및 활용전략

1. 국내업계 수혜분야

에너지효율 제품

-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고효율·에너지절약형 냉·난방기기, 조명 등 에너지 효율성이 강조된 제품(예: 에너지스타 라벨부착 제품)과 단열재 등 건축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재생에너지 산업

- '08.10월 세제혜택 연장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경기부양법안 발효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예상 됨
 - * 특히, 생산세 공제 기간을 3년 연장(2012년까지)하고 세액 공제대신 프로젝트 비용의 30%를 교부금(grant)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세안을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시킨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함
- 한국산 진출유망상품은 풍력발전용 단조제품(타워, 플랜지 등), 베어링, 기어박스 등과 태양광 패널

차세대 자동차 배터리

- 정부 차원에서의 친환경 자동차 조달 재원 확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대폭 확대 등에 힘입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 예상,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동반 증가할 전망

인프라 구축 사업

- 연방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적용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산 진출가능성 타진 필요

□ 정보통신 산업

- IT 산업이 발달한 한국 기업 진출이 특히 유망한 광대역통신망 관련 장비 (스위치, 라우터, 컴퓨터 주변기기), 지능형전력망 관련 제품(모니터, 미터기 등), 컴퓨터(노트북 포함), 일반 가전제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 증가가 예상 됨

□ 폐수처리 산업

- 대형 프로젝트보다 소형 프로젝트 위주로 한국 기업들 접근해 볼만 함 높은 진입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지 유력기업과 협력을 통해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 일례로, 풍력, 태양광, 청정석탄발전 뿐만 아니라 수처리 부문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GE는 한국의 우수한 수처리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 여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높은 투자 관심
 - * 최근 GE Water사는 수처리 기술 중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협기성 기술' 수처리 제품 또는 프로세스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반응

□ 중장비·기계 산업

- 인프라 건설 붐에 따라 한국산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건설중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됨
- 또한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 확대 등의 감세 조항을 통해 한국산 기계류의 판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

2. 활용전략

□ 정보수집 강화

-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연방·지방 정부 발주 프로젝트 정보는 웹사이트(www.recovery.gov)에 게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수시로 확인

□ 신속한 진출노력

- 경기부양예산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중 다수가 법안발효(09.2.17) 후 30~120일 이내에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신속한 참여 노력이 요구 됨

□ 프라이머 벤더 하청협력

- 미국 연방정부 조달에서는 계약자 선정 시, 과거 3~5년 간 미국 내 조달 실적(past performance)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로, 조달 담당관에 따라 이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기도 함
- 프라이머 벤더의 하청업체로 제품을 공급할 경우, 강기 의무 요건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진출이 가능해 짐
- 재원 부족으로 연기되거나 중단되었던 프로젝트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경기부양 예산이 배정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의 프라이머 벤더를 접촉하여 하청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

□ 미국 투자진출 고려

-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아웃소싱하는 비중이 높지만, 미국 내 수요 증가에 따라 현지생산이 늘어나는 추세
 - * 외국산에 비해 운송비 절감 효과가 있어 대형 풍력 터빈제품은 미국산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佛 알스톰사는 08.12월 테네시주에 공장신설 발표
-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된 국내기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등 공격적인 진출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끝>

2008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Issue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시장 틈새시장	2009.1
09-002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2009.1
09-003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2009.2

●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 자동차시장 미리보기	2009.2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9.1
09-002	해외 프로젝트 진출 연찬회	2009.1
09-003	해외 주요국 레저보트산업 조사	2009.1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9.1
09-002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09.1
09-003	유럽 재생에너지시장 진출설명회	2009.1
09-004	한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 설명회 및 상담회	2009.1
09-005	TRADE KOREA 2009 해외시장개척 설명회 및 상담회	2009.2
09-006	TRADE KOREA 2009 해외 마케팅 핸드북	2009.2

작성자

- ◆ 워싱턴KBC 이정선 과장
- ◆ 시카고KBC 어재선 과장
- ◆ 북미지역본부 장용훈 부센터장
- ◆ 구미팀 이제혁 과장

Global Issue Report 09-004

美경기부양법안 분석 및 활용전략

발행인 | 조환익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9년 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9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